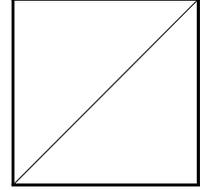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8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3. 12. 6. (제 21 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개정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12. 6.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의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23. 9. 15.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개정 배경

- IASB는 필라2 모범규칙(글로벌 최저한세*)을 시행으로 제정된 세법에 따라 생기는 법인세(이하 '필라2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23년 5월 IAS 12를 개정·발표

*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총 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추가세액을 지배기업 소재지 관할국(원칙)에 납부

-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4년부터 필라2 법인세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준서(제1012호)를 개정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 ①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미인식하고 이에 관한 정보도 미공시(문단 4A)

- 다만, 이연법인세 인식 및 공시 예외규정 적용 사실 공시(문단 88A)

- ②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문단 88B~88D)

-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익스포저 관련 질적·양적 정보

- 익스포저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 추정 불가 시, 그 사실과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시

-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논의 결과('23.11.24.), 원안대로 접수

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이연법인세 인식·공시 예외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 공시: 개정안 공표 즉시 시행하고 소급 적용
-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 공시: '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및 적용
 - 다만,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 공시는 불필요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필라2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회계처리 및 공시 부담 경감
 - 단, 법률 시행 이후 필라2 법인세와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을 별도 공시해야 함 → '24년 1분기부터 당기법인세 발생액을 추정해야 하는 부담 존재*
- * '24년 필라2 법인세로 인한 당기법인세 공시는 계도기간을 두어 부담을 해소할 예정 (금감원과 협의)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2023. 7. 21.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2023. 7. 26. ~ 2023. 8. 25.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2023. 9. 15.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4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보고(2023.11.24.)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3. 9. 15.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3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보는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3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결론도출근거 개정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문단 4A, 88A~88D(관련 소제목과 문단 88D 다음 글상자 포함), 98M 이 추가되었다.

적용범위

...

4A 이 기준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적용한다. 이하, 이러한 세법과 그 세법에서 생기는 법인세를 각각 '필라2 법률', '필라2 법인세'라고 한다.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한다.

...

공시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88A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4A 참조).

88B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

88C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88D

문단 88C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필라2 법인세 익스포저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필라2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p>문단 88C~88D를 설명하는 예시</p> <p>문단 88C~88D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p> <p>(1) 필라2 법률에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필라2 법인세에 익스포저가 존재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같은 질적 정보</p> <p>(2) 다음 (가) 또는 (나)와 같은 양적 정보</p> <p>(가) 필라2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유효세율을 나타내는 정보</p> <p>(나) 필라2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나타내는 정보</p>
--

...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

98M 2023년 x월에 공표한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라 문단 4A와 88A~88D를 추가하였다.

(1) 문단 4A와 88A는 이 개정 내용이 공표되는 즉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2) 문단 88B~88D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경우,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 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개정(2023. 9. 1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96~BC117과 관련 제목이 추가되었다.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2023년 개정)

BC96 2023년 5월에 IASB는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을 공표하였고 개정 내용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였다.

- (1)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
- (2) 영향 받는 기업에 한정되는 공시 요구사항

배경

필라2 모범규칙

BC97 2021년 10월, 135개국 이상의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가 발표한 ‘경제의 디지털 화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Two-Pillar Solution)에 관한 성명서’에 동의하였다. 이후, OECD는 이 해결책의 두 번째 필라와 관련되는 모범규칙과 그 밖의 문서(필라2 모범규칙)를 발표하였다.

BC98 필라2 모범규칙은 합의된 공통 접근법의 일부로서 각국이 국내 법인세 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다.

- (1)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최저한세를 확실히 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러한 목적은 각국의 초과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이 적어도 15%가 되도록 하는 추가세액 체계를 적용하여 이를 것이다.
- (3) 일반적으로 이 규칙은 연결실체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종속기업의 이익에 대해 해당 지배기업 소재지 관할국에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법인세 회계처리의 잠재적 영향

BC99 이해관계자들은 단시일 내에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생기는 법인세 회계처리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IASB에 알렸다. 그 우려는 다음과 관련된다.

- (1) *IAS 12의 적용범위* -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추가세액이 그 규칙 적용 대상인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법인세이므로 IAS 12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추가세액이 연결실체 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법인세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하였다[예: 기업이 자신의 보고 연결실체에 속하지 않는 기업(연결실체 내에서 서열이 같은 다른 종속기업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러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 (2)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추가세액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가 불명확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었다.
 - (가) 이 규칙이 일시적차이를 추가로 생기게 하는가? 특히,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회수나 결제가 미래 추가세액 납부(납부액에서 차감)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가?
 - (나)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잠재적인 추가세액 납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인식된 이연법인세를 재측정해야 하는가?
 - (다) IAS 12 문단 47에서 미래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세액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 기간에 적용될 세율은, 신뢰성 있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려운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 (3) *이연법인세 정보의 유용성* -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기업이 이러한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적용할 세율을 추정하는 경우, 추가세액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 생기는 정보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4) *명확화에 대한 긴급한 필요* -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국가에서 이 규칙의 시행이 임박하여 추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에 IAS 12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명확성의 결여는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적용하는 회계처리를 다양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

BC100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추가세액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IAS 12의 원칙과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도 이해관계자와 더 많이 접촉하고, IAS 12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IASB는 각국에서 새로운 세법을 제정하기 전에, 그리고 그 결과로 기업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그 법을 반영해야 하기 전에, 이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101 그러므로 IASB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IAS 12의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예외 규정 도입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단시일 내에 다수 국가에서 제정될 복잡하고 새로운 세법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면제 규정을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제공한다.
- (2) IAS 12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개발되고 그 결과로 기준서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 (3) 이해관계자에게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필라2 모범규칙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시간을, 기업에는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할 시간을, IASB에는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시간을 준다.

BC102 또 IASB는 기업이 한시적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기업은 필라2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예외 규정의 적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적용범위

BC103 IASB는 추가세액이 법인세인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99(1) 참조). IASB는 긴급히 필요한 개정의 완료를 지연하지 않으면서 추가 설명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IASB는 기업이 모든 상황에서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보도록 요구하지도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IA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추가세액이 법인세인지를 판단한다.

BC104 IASB는 한시적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를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인식된 이연법인세의 측정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기업이 관련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라2 법인세를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이연법인세를 재측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한시적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무 적용

BC105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시적 예외 규정을 의무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 (1) 재무제표의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2) 기업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IAS 12의 원칙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위험을 제거한다.

존속 기간

BC106 IASB는 문단 BC100에서 기술한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활동들은 국가들이 필라2 모범규칙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ASB는 한시적 예외 규정이 언제까지 적용될지를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IASB는 추가 작업을 할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과 관련되는 상황 변화를 관찰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

법률 시행일 도래 전의 기간

공시 목적

BC107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는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 기간에, 제정된 법률은 그 기간 법인세비용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익스포저를 만들 수 있고, 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다른 정보에서 이러한 익스포저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이 정보 수요에 기초하여 공시 목적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 목적을 이루는 정보

BC108 IASB는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기업은 필라2 법률을 따르기 위한 준비와 기업의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기업이 그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IASB는 기업이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특정 정보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검토의견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정보를 공시하는 효익이 공시를 작성하는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 (1)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가 필라2 모범규칙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와 다르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에 비추어 IAS 12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정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기업은 기업의 익스포저에 대한 평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선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그 공시 요구사항은 소수 보고기간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오직 소수 보고기간 때문에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은 그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기업의 원가(예: 새로운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BC109 검토의견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일부 국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그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IASB는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많은 기업이 자신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일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이미 자신의 익스포저 평가가 상당히 진행되어 현재 법인세 회계에 필라 2 법인세 회계처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BC110 문단 BC108~BC109에서 논의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공시 목적을 이루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지만,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항목이나 그 정보를 작성하는 기준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 접근법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평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2)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이 접근법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 적용되는 IAS 8 문단 30~31의 요구사항과 비슷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정보가 기업이 추가 정보를 공시할 수 없는 이유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111 IASB 위원 일부는 기업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하면 일부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양적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 위원 일부는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많은 기업은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한 후 IASB 위원 다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용자의 정보 수요 충족과 그러한 정보 보고원가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12 BC112 또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에 다음과 같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을 가진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IASB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모두가 필요하다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의 예시를 포함하였다.

(2) 보고기간 말 기업의 상황에 기초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가능성 있는 미래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미래전망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기업은 미래 이익을 예측하거나, 미래 기간에 예상되는 경감 조치를 반영하거나, 세법의 향후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BC113 더욱이 IASB는,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필라2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시하는 정보가 다음과 같더라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그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지는 않는, 단순화된 기준으로 작성된다.
- (2) 정확성의 수준이 높지 않다.

법률이 시행되는 기간

BC114 IASB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이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전체 법인세와 비교하여 필라2 법인세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기업은 이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작성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영향 분석

BC115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개정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 (1) 개정 내용은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시에 면제 규정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IAS 12의 다양한 해석이 개발되는 것을 방지한다.
- (2) 개정 내용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IA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된 정보가 유용하도록 보호한다.
- (3) 개정 내용은 필라2 법률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개선한다.

경과 규정

BC116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 (1) 한시적 예외 규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이 공표되는 즉시 기업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문단 88B~88D의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요구하지 않아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BC117 IASB는 기업이 한시적 예외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날(비록 그 날이 개정 내용 공표 전일지라도)부터 예외 규정을 적용하게 하며 추가 원가가 들지는 않게 할 것이다.

소수의견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대한 Zach Gast의 반대

- DO1 Gast 위원은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공표에 반대하였다. 그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덜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려하였다.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은 다국적 연결실체가 전 세계적으로 과세되는 방식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Gast 위원은, 개정으로 도입된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한 IAS 12의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가 이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 DO2 Gast 위원은 원가와 효익의 이유로 IASB가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예외 규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의적인 정보 손실을 초래하고 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Gast 위원은 이 개정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고 목적에 기반한 공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Gast 위원은 기업이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체하는 양적 정보(보장책) 제공을 요구함 없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 결과, Gast 위원은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는 많은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한적이고 표준적인 공시만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 DO3 Gast 위원은 보장책(예: IASB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제안한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특정 정보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이 도입되어야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결론 내릴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적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보았다. 비록 Gast 위원은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가 필라2 모범규칙의 요구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효과적인 공시를 제공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할 수 있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명시된 재무제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개정안 영·한 대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개정안 ‘법인세’

본문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p>Amendments to IAS 12 <i>Income Taxes</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Paragraphs 4A, 88A - 88D (including their related heading and the box after paragraph 88D) and 98M are added.</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문단 4A, 88A~88D(관련 소제목과 문단 88D 다음 글상자 포함), 98M 이 추가되었다.</p> </div>
<p>Scope</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 4A <u>This Standard applies to income taxes arising from tax law enacted or substantively enacted to implement the Pillar Two model rules published by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cluding tax law that implements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es described in those rules. Such tax law, and the income taxes arising from it, are hereafter referred to as ‘Pillar Two legislation’ and ‘Pillar Two income taxes’.</u> As an exception to the requirements in this Standard, an entity shall neither recognise nor disclose information abou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related to</p>	<p>적용범위</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 4A 이 기준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적용한다. 이하, 이러한 세법과 그 세법에서 생기는 법인세를 각각 ‘필라2 법률’, ‘필라2 법인세’라고 한다.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p><u>Pillar Two income taxes.</u></p> <p>.....</p>	
<p>Disclosure</p>	<p>공시</p>
<p>...</p>	<p>...</p>
<p><u>International tax reform—Pillar Two model rules</u></p>	<p><u>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u></p>
<p>88A <u>An entity shall disclose that it has applied the exception to recognising and disclosing information abou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related to Pillar Two income taxes (see paragraph 4A).</u></p>	<p>88A <u>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4A 참조).</u></p>
<p>88B <u>An entity shall disclose separately its current tax expense (income) related to Pillar Two income taxes.</u></p>	<p>88B <u>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u></p>
<p>88C <u>In periods in which Pillar Two legislation is enacted or substantively enacted, but not yet in effect, an entity shall disclose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information that help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understand the entity’s exposure to Pillar Two income taxes arising from that legislation.</u></p>	<p>88C <u>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u></p>
<p>88D <u>To meet the disclosure objective in paragraph 88C, an entity shall</u></p>	<p>88D <u>문단 88C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에 기업</u></p>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p><u>disclo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its exposure to Pillar Two income taxe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This information does not have to reflect all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Pillar Two legislation and can be provided in the form of an indicative range. To the extent information is not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an entity shall instead disclose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entity's progress in assessing its exposure.</u></p>	<p><u>의 필라2 법인세 익스포저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필라2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u></p>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p>Examples illustrating paragraphs 88C-88D</p> <p>Examples of information an entity could disclose to meet the objective and requirements in paragraphs 88C-88D include:</p> <p>(a) qualitative information such as information about how an entity is affected by Pillar Two legislation and the main jurisdictions in which exposures to Pillar Two income taxes might exist; and</p> <p>(b) quantitative information such as:</p> <p>(i) an indication of the proportion of an entity's profits that might be subject to Pillar Two income taxes and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pplicable to those profits; or</p> <p>(ii) an indication of how the entity's average effective tax rate would have changed if Pillar Two legislation had been in effect.</p>	<p>문단 88C~88D를 설명하는 예시</p> <p>문단 88C~88D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p> <p>(1) 필라2 법률에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필라2 법인세에 익스포저가 존재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같은 질적 정보</p> <p>(2) 다음 (가) 또는 (나)와 같은 양적 정보</p> <p>(가) 필라2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유효세율을 나타내는 정보</p> <p>(나) 필라2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나타내는 정보</p>
<p>Effective date</p> <p>...</p> <p>98M <i>International Tax Reform—Pillar Two Model Rules</i>, issued in May 2023, added paragraphs 4A and 88A-88D. An entity shall:</p> <p>(a) apply paragraphs 4A and 88A immediately upon the issue</p>	<p>시행일</p> <p>...</p> <p>98M 2023년 x월에 공표한 '국제조세 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라 문단 4A와 88A~88D를 추가하였다.</p> <p>(1) 문단 4A와 88A는 이 개정 내용이 공표되는 즉시 기업</p>

IAS 12 본문 개정	제1012호 본문 개정안
<p><u>of these amendments and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and</u></p> <p><u>(b) apply paragraphs 88B–88D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se paragraphs for any interim period ending on or before 31 December 2023.</u></p>	<p><u>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u></p> <p><u>(2) 문단 88B~88D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경우,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u></p>

K-IFRS 제1012호 개정 '법인세'

결론도출근거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2 <i>Income Taxes</i></p>	<p>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Income Tax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p>
<p>Paragraphs BC96 - BC117 and their related headings are added.</p>	<p>문단 BC96~BC117과 관련 제목이 추가되었다.</p>
<p>International Tax Reform—Pillar Two Model Rules (2023 amendments)</p>	<p>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 (2023년 개정)</p>
<p>BC96 In May 2023, the IASB issued <i>International Tax Reform—Pillar Two Model Rules</i>. The amendments introduced:</p> <p>(a) a temporary exception to the requirements to recognise and disclose information abou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related to Pillar Two income taxes; and</p> <p>(b) targeted disclosure requirements for affected entities.</p>	<p>BC96 2023년 5월에 IASB는 '국제조세 개혁 - 필라2 모범규칙'을 공표하였고 개정 내용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였다.</p> <p>(1)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p> <p>(2) 영향 받는 기업에 한정되는 공시 요구사항</p>
<p>Background</p>	<p>배경</p>
<p>...</p> <p>Pillar Two model rules</p> <p>BC97 In October 2021, more than 135 jurisdictions agreed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p>	<p>...</p> <p>필라2 모범규칙</p> <p>BC97 2021년 10월, 135개국 이상의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G20의 세원잠식과 소득</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s <i>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i>. Since then, the OECD has published model rules and other documents related to the second pillar of this solution (the Pillar Two model rules).</p> <p>BC98 The Pillar Two model rules provide a template that jurisdictions can translate into domestic tax law and implement as part of an agreed common approach. The ru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im to ensure that large multinational groups pay a minimum amount of tax on income arising in each jurisdiction in which they operate; (b) would achieve that aim by applying a system of top-up taxes that results in the total amount of taxes payable on excess profit in each jurisdiction representing at least the minimum rate of 15%; and (c) typically require the ultimate parent entity of a group to pay top-up tax - in the 	<p>이전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가 발표한 '경제의 디지털화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Two-Pillar Solution)에 관한 성명서'에 동의하였다. 이후, OECD는 이 해결책의 두 번째 필라와 관련되는 모범규칙과 그 밖의 문서(필라2 모범규칙)를 발표하였다.</p> <p>BC98 필라2 모범규칙은 합의된 공통 접근법의 일부로서 각국이 국내 법인세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최저한세를 확실히 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러한 목적은 각국의 초과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이 적어도 15%가 되도록 하는 추가세액 체계를 적용하여 이를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이 규칙은 연결실체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종속기업의 이익에 대해 해당 지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jurisdiction in which it is domiciled- on profits of its subsidiaries that are taxed below 15%.</p>	<p>배기업 소재지 관할국에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다.</p>
<p>Potential implications for income tax accounting</p> <p>BC99 Stakeholders informed the IASB of concerns about the implications for income tax accounting resulting from jurisdictions implementing the Pillar Two model rul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ose concerns related to:</p> <p>(a) <i>the scope of IAS 12</i>—stakeholders were generally of the view that top-up tax is an income tax—and therefore within the scope of IAS 12—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ltimate parent entity of a group subject to the rules. However, stakeholders said it was unclear whether top-up tax is an income tax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 group’s subsidiaries—for example, if an entity is liable to pay such tax with respect to profits of entities that are not part of its reporting group (such as with respect to a fellow</p>	<p>법인세 회계처리의 잠재적 영향</p> <p>BC99 이해관계자들은 단시일 내에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생기는 법인세 회계처리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IASB에 알렸다. 그 우려는 다음과 관련된다.</p> <p>(1) <i>IAS 12의 적용범위</i> -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추가세액이 그 규칙 적용 대상인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법인세이므로 IAS 12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추가세액이 연결실체 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법인세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하였다[예: 기업이 자신의 보고 연결실체에 속하지 않는 기업(연결실체 내에서 서열이 같은 다른 종속기업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러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subsidiary's profits).</p> <p>(b) <i>the accounting for deferred taxes</i>—stakeholders said it was unclear how an entity would account for deferred taxes related to top-up tax. For example, they asked:</p> <p>(i) do the rules create additional temporary differences? In particular, is it possible to link directly the recovery or settlement of the carrying amount of assets and liabilities to future top-up tax payments (or to the reduction of these payments)?</p> <p>(ii) should an entity remeasure deferred taxes recognised under domestic tax regimes to reflect potential top-up tax payable under the Pillar Two model rules?</p> <p>(iii) which tax rate should an entity use to measure deferred taxes related to top-up tax, considering that paragraph 47 of IAS 12 requires an entity to use the tax rates expected to apply in future periods? The tax</p>	<p>(2) <i>이연법인세 회계처리</i> - 이해 관계자들은 기업이 추가세액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가 불명확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었다.</p> <p>(가) 이 규칙이 일시적차이를 추가로 생기게 하는가? 특히,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회수나 결제가 미래 추가세액 납부(납부액에서 차감)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가?</p> <p>(나)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잠재적인 추가세액 납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인식된 이연법인세를 재측정해야 하는가?</p> <p>(다) IAS 12 문단 47에서 미래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세액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 기간에 적용될 세율은, 신</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rates that will apply in these periods depend on several factors that are difficult—if not impossible—to forecast reliably.</p> <p>(c) <i>the usefulness of deferred tax information</i>—stakeholders questioned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that would result from recognising deferred taxes related to top-up tax, particularly if an entity is required to estimate the tax rate to apply in measuring these deferred taxes.</p> <p>(d) <i>the urgent need for clarity</i>—stakeholders said there was little time to resolve the uncertainties about how to apply IAS 12 in accounting for top-up tax given the imminent implementation of the rules in some jurisdictions. This lack of clarity would result in diversity in the accounting applied by affected entities and information that is potentially not useful.</p>	<p>회성 있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지라도 어려운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p> <p>(3) <i>이연법인세 정보의 유용성</i> -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기업이 이러한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적용할 세율을 추정하는 경우, 추가세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 생기는 정보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p> <p>(4) <i>명확화에 대한 긴급한 필요</i> -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국가에서 이 규칙의 시행이 임박하여 추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에 IAS 12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명확성의 결여는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적용하는 회계처리를 다양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p>
<p>Temporary exception to deferred accounting</p>	<p>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한시규정</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BC100 After considering stakeholders' concerns, the IASB agreed that entities need time to determine how to apply the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IAS 12 to account for deferred taxes related to top-up tax. The IASB also needs time to engage further with stakeholders and to consider whether any action is needed to support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IAS 12. The IASB concluded that it was not feasible to complete these activities before jurisdictions enact new tax laws and thus before entities are required to reflect those laws in accounting for deferred taxes.</p>	<p>BC100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추가세액과 관련 되는 이연법인세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IAS 12의 원칙과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도 이해관계자와 더 많이 접촉하고, IAS 12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IASB는 각국에서 새로운 세법을 제정하기 전에, 그리고 그 결과로 기업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그 법을 반영해야 하기 전에, 이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p>
<p>BC101 The IASB therefore decided to introduce a temporary exception to the requirements in IAS 12 to recognise and disclose information abou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related to Pillar Two income taxes. The IASB concluded that doing so would:</p> <p>(a) provide affected entities with relief from accounting for</p>	<p>BC101 그러므로 IASB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IAS 12의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예외 규정 도입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p> <p>(1) 단시일 내에 다수 국가에서 제정될 복잡하고 새로운 세</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in relation to complex new tax legislation to be enacted by multiple jurisdic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p> <p>(b) avoid the development of diverse interpretations of IAS 12 and the resulting in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Standard; and</p> <p>(c) allow time for stakeholders to assess how the Pillar Two model rules have been implemented in different jurisdictions, for entities to assess how they are affected and for the IASB to consider whether to do further work.</p>	<p>법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면제 규정을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제공한다.</p> <p>(2) IAS 12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개발되고 그 결과로 기준서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한다.</p> <p>(3) 이해관계자에게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필라2 모범규칙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시간을, 기업에는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할 시간을, IASB에는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시간을 준다.</p>
<p>BC102 The IASB also decided to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that it has applied the temporary exception. The IASB concluded that this requirement would:</p> <p>(a) provide entity-specific information because some entities are unaffected by Pillar Two legislation and, therefore, would not apply the exception; and</p> <p>(b) make the exception's application transparent to users of financial</p>	<p>BC102 또 IASB는 기업이 한시적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p> <p>(1)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기업은 필라2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p> <p>(2)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statements during the periods in which it is applied.</p>	<p>예외 규정의 적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한다.</p>
<p>Scope</p>	<p>적용범위</p>
<p>BC103 The IASB decided not to provide further clarifications or guidance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op-up tax is an income tax (see paragraph BC99(a)). The IASB concluded that it would not be possible to do so without delaying the finalisation of amendments that were urgently needed. The IASB also decided not to require entities to deem top-up tax to be an income tax in all circumstances because that could have resulted in unintended consequences. Therefore, an entity determines whether, in its circumstances, top-up tax is an income tax before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IAS 12.</p>	<p>BC103 IASB는 추가세액이 법인세인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99(1) 참조). IASB는 긴급히 필요한 개정의 완료를 지연하지 않으면서 추가 설명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IASB는 기업이 모든 상황에서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보도록 요구하지도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IA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추가세액이 법인세인지를 판단한다.</p>
<p>BC104 The IASB decided it was un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temporary exception to include the measurement of deferred taxes recognised under</p>	<p>BC104 IASB는 한시적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를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인식된 이연법인세의 측정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기업이 관련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회수하</p>

<p>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p> <p>domestic tax regimes. The IASB concluded that an entity would not remeasure such deferred taxes to reflect Pillar Two income taxes it expects to pay when recovering or settling a related asset or liability because the temporary exception applies to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related to such income taxes.</p>	<p>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p> <p>거나 결제할 때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라2 법인세를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이연법인세를 재측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한시적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Mandatory application</p> <p>BC105 The IASB decided to make the application of the temporary exception mandatory because doing so woul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result in greater comparability between entities' financial statements and, therefore, more useful information for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b) eliminate the risk of entities inadvertently developing accounting policie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IAS 12. 	<p>의무 적용</p> <p>BC105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시적 예외 규정을 의무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의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기업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IAS 12의 원칙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위험을 제거한다.
<p>Duration</p> <p>BC106 The IASB concluded that it was not possible to determine how</p>	<p>존속 기간</p> <p>BC106 IASB는 문단 BC100에서 기술한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p>

<p>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p> <p>much time would be required for the activities described in paragraph BC100 because they would depend on how and when jurisdictions implement the Pillar Two model rules. Therefore, the IASB decided not to specify how long the temporary exception will be in place. The IASB also decided to monitor developmen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lar Two model rules to determine when to do further work.</p>	<p>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p> <p>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활동들은 국가들이 필라2 모범규칙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ASB는 한시적 예외 규정이 언제까지 적용될지를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IASB는 추가 작업을 할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과 관련되는 상황 변화를 관찰하기로 결정하였다.</p>
<p>Disclosures</p>	<p>공시</p>
<p>Periods before legislation is in effect</p> <p><i>Disclosure objective</i></p> <p>BC107 In periods in which Pillar Two legislation is enacted or substantively enacted but not yet in effect,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need information that helps them understand an entity's exposure to Pillar Two income taxes arising from that legislation. In these periods, the enacted legislation could create exposures that are not yet reflected in the entity's income tax expense for the period, and users might be unable to</p>	<p>법률 시행일 도래 전의 기간</p> <p><i>공시 목적</i></p> <p>BC107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는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 기간에, 제정된 법률은 그 기간 법인세비용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익스포저를 만들 수 있고, 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다른 정보에서 이러한 익스포저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따</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understand such exposures from other information an entity discloses in its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ly, the IASB decided to set a disclosure objective based on this information need.</p>	<p>라서 IASB는 이 정보 수요에 기초하여 공시 목적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p>
<p><i>Information that meets the disclosure objective</i></p> <p>BC108 The IASB considered that an entity was likely to be in the process of assessing its exposure and preparing to comply with Pillar Two legislation in periods in which the legislation is enacted or substantively enacted but not yet in effect. Requiring an entity to disclose information reflecting all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legislation would either not be feasible or be likely to result in undue cost or effort. Consequently, when it exposed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IASB proposed requiring an entity to disclose specific items of information based on the requirements in IAS 12. However, feedback suggested the benefits of disclosing such information might not outweigh the costs of preparing it, particularly because:</p> <p>(a) information based on the requirements in IAS 12</p>	<p><i>공시 목적을 이루는 정보</i></p> <p>BC108 IASB는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기업은 필라2 법률을 따르기 위한 준비와 기업의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기업이 그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IASB는 기업이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특정 정보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검토의견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정보를 공시하는 효익이 공시를 작성하는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p> <p>(1)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가 필라2 모범규칙의 요</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differs from that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the Pillar Two model rules. Respondents expressed mixed views about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based on the requirements in IAS 12 for the purpose of informing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bout an entity's exposure to Pillar Two income taxes. Some respondents said the information could be misleading, and that entities might be able and prefer to disclose information available from assessments about their exposure.</p> <p>(b) the disclosure requirements are expected to apply to only a few reporting periods. Respondents said the benefits of providing information based on IAS 12 requirements for only a few reporting periods might not outweigh the costs an entity would incur to prepare that information (for example, the costs of setting up new processes).</p>	<p>구사항에 기초한 정보와 다르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에 비추어 IAS 12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정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기업은 기업의 익스포저에 대한 평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선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p> <p>(2) 그 공시 요구사항은 소수 보고기간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오직 소수 보고기간 때문에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은 그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기업의 원가(예: 새로운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p>
<p>BC109 In considering this feedback, the IASB observed that legislation in some jurisdictions was expected to be effective as early as 1 January 2024. Therefore, the</p>	<p>BC109 검토의견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일부 국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그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IASB는 공시 요구사항이 적</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IASB expected many entities to have some information about their exposure available to them by the tim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are applicable. For example, some entities might have already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ssessing their exposure and might be preparing to account for Pillar Two income taxes in their current tax accounting.</p> <p>BC110 To balance the factors discussed in paragraphs BC108–BC109, the IASB decided:</p> <p>(a) to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meets the disclosure objective, but not to specify the items of information an entity is required to disclose or the basis on which the entity prepares that information. This approach would allow an entity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from its assessments and that reflects its circumstances, which will vary from entity to entity.</p> <p>(b) to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information. The IASB concluded that this approach is similar to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30–31 of IAS 8, which apply in a comparable situation. To the extent</p>	<p>용될 때까지 많은 기업이 자신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일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이미 자신의 익스포저 평가가 상당히 진행되어 현재 법인세 회계에 필라2 법인세 회계 처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p> <p>BC110 문단 BC108~BC109에서 논의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이하기로 결정하였다.</p> <p>(1) 공시 목적을 이루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지만,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항목이나 그 정보를 작성하는 기준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 접근법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평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허용할 것이다.</p> <p>(2)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이 접근법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 적용되는 IAS 8 문단 30~31의 요구사항과 비슷하다고 결론 내렸다.</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information is not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the IASB decided to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instead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entity's progress in assessing its exposure. The IASB concluded that this information would help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understand why the entity is unable to disclose further information.</p>	<p>IASB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정보가 기업이 추가 정보를 공시할 수 없는 이유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p>
<p>BC111 Some IASB members were concerned that requiring an entity to disclose only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information could result in some entities disclosing no quantitative information to meet the disclosure objective. Nonetheless, having considered the feedback, some IASB members expected that, by the tim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are applicable, many entities are likely to have available to them some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information. After considering those views, a majority of IASB members concluded that such a requirement appropriately balances meeting users' information needs with the cost of reporting such information.</p>	<p>BC111 IASB 위원 일부는 기업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하면 일부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양적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 위원 일부는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많은 기업은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한 후 IASB 위원 다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용자의 정보 수요 충족과 그러한 정보 보고원가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다.</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BC112 The IASB also decided to require that, to meet the disclosure objective, an entity shall disclose:</p> <p>(a) information that i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 nature. The IASB considered feedback from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at indicated that they need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to understand an entity's exposure to Pillar Two income taxes. The IASB included example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to help an entity understand the type of information it can provide to meet the disclosure objective.</p> <p>(b) information based on an entity's circumstance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The IASB concluded that an entity would not have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possible future transactions and other possible future events (forward-looking information) to meet this requirement. For example, an entity would not be required to forecast future profits, reflect mitigation actions it expects to take in</p>	<p>BC112 또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에 다음과 같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p> <p>(1)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을 가진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IASB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모두가 필요하다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의 예시를 포함하였다.</p> <p>(2) 보고기간 말 기업의 상황에 기초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가능성 있는 미래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미래전망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기업은 미래 이익을 예측하거나, 미래 기간에 예상되는 경감 조치를 반영하거나, 세법의 향후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future periods, or consider possible future changes in tax legislation.</p> <p>BC113 Furthermore, the IASB clarified that the information an entity is required to disclose to meet the disclosure objective does not have to reflect all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Pillar Two legislation and can be provided in the form of an indicative range. The IASB concluded that the information an entity discloses to meet the disclosure objective would be useful even if:</p> <p>(a) it is prepared on a simplified basis that does not reflect all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legislation; and</p> <p>(b) it lacks a high level of precision.</p>	<p>BC113 더욱이 IASB는,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필라2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시하는 정보가 다음과 같더라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p> <p>(1) 그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지는 않는, 단순화된 기준으로 작성된다.</p> <p>(2) 정확성의 수준이 높지 않다.</p>
<p>Periods when legislation is in effect</p> <p>BC114 The IASB decided to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separately the current tax expense related to Pillar Two income taxes. The IASB concluded that this information:</p> <p>(a) would help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understand the magnitude of Pillar Two</p>	<p>법률이 시행되는 기간</p> <p>BC114 IASB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이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p> <p>(1)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전체 법인세와 비교하여 필라</p>

<p>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p> <p>income taxes relative to an entity's overall tax expense; and</p> <p>(b) would not be costly to prepare because an entity would already be required to recognise current tax related to Pillar Two income taxes.</p>	<p>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p> <p>2 법인세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p> <p>(2) 기업은 이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작성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p>
<p>Effects analysis</p>	<p>영향 분석</p>
<p>BC115 The IASB concluded that the benefits of the amendments outweigh the costs because the amendments:</p> <p>(a) provide timely relief for affected entities and avoid diverse interpretations of IAS 12 developing in practice;</p> <p>(b) safeguard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prepared applying IAS 12 requirements until questions about how to apply the Standard have been resolved; and</p> <p>(c) improve the information provided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before and after Pillar Two legislation is in effect.</p>	<p>BC115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개정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p> <p>(1) 개정 내용은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시에 면제 규정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IAS 12의 다양한 해석이 개발되는 것을 방지한다.</p> <p>(2) 개정 내용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IA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된 정보가 유용하도록 보호한다.</p> <p>(3) 개정 내용은 필라2 법률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개선한다.</p>
<p>Transition</p>	<p>경과 규정</p>
<p>BC116 The IASB concluded that:</p>	<p>BC116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a) for the temporary exception to be effective, it needs to be available to entities immediately upon the issue of the amendments; and</p> <p>(b) requiring an entity to apply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paragraphs 88B–88D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but not for interim periods ending on or before 31 December 2023—provides an entity with enough time to prepare the required information.</p> <p>BC117 The IASB decided to require an entity to apply the temporary exception retrospectively. This requirement would result in an entity applying the exception from the date Pillar Two legislation is enacted or substantively enacted—even if that date is before the date of issuing the amendments—and would not result in additional costs.</p>	<p>다.</p> <p>(1) 한시적 예외 규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이 공표되는 즉시 기업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p> <p>(2) 문단 88B~88D의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요구하지 않아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p> <p>BC117 IASB는 기업이 한시적 예외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날(비록 그 날이 개정 내용 공표 전일이라도)부터 예외 규정을 적용하게 하며 추가 원가가 들지는 않게 할 것이다.</p>
Dissenting opinion	소수의견
Dissent of Zach Gast from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대한 Zach Gast의 반대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 data-bbox="209 235 790 338"><i>International Tax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i></p> <p data-bbox="209 421 790 1323">DO1 Mr Gast voted against issuing International Tax Reform—Pillar Two Model Rules. He is concerned that these amendments will result in an entity disclosing less useful information to help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ssess the entity’s future cash flows.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lar Two model rules will produce a permanent change in how multinational groups are taxed globally. In Mr Gast’s view,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IAS 12, including those introduced by the amendments, provide insufficient information for users to analyse this change.</p> <p data-bbox="209 1391 790 2033">DO2 Mr Gast agrees the IASB should introduce the temporary exception for cost–benefit reasons. However, he is of the view that the exception results in a significant loss of information for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at effective disclosures are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at loss. Mr Gast agrees that the amendments should allow for effective objective-based disclosures when information is readily available.</p>	<p data-bbox="813 421 1396 1173">DO1 Gast 위원은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공표에 반대하였다. 그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덜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려하였다.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은 다국적 연결실체가 전 세계적으로 과세되는 방식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Gast 위원은, 개정으로 도입된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한 IAS 12의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가 이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p> <p data-bbox="813 1391 1396 2033">DO2 Gast 위원은 원가와 효익의 이유로 IASB가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예외 규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의적인 정보 손실을 초래하고 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Gast 위원은 이 개정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고 목적에 기반한 공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Gast 위원은 기업이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However, Mr Gast is of the view that the requirement to disclose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information to meet the disclosure objective is not sufficiently stringent without requiring entities to provide alternative quantitative information (a backstop) when information is deemed not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As a result, Mr Gast is concerned that, in periods in which legislation is enacted or substantively enacted but not yet in effect, many entities will provide limited, boilerplate disclosures that do not meet users' information needs.</p> <p>DO3 Mr Gast is of the view that introducing a backstop—such as requiring an entity to disclose the specific items of information based on the requirements in IAS 12 that the IASB had proposed when it exposed draft amendments for comment—would have ensured that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receive at least a basic set of quantitative information they could use to begin their analyses when an entity concludes there is no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information that meets the disclosure objective. Although Mr Gast acknowledges that information based on the requirements in IAS</p>	<p>없다고 생각될 때, 대체하는 양적 정보(보장책) 제공을 요구함 없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 결과, Gast 위원 은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는 많은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한적이고 표준적인 공시만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p> <p>DO3 Gast 위원은 보장책(예: IASB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제안한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특정 정보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이 도입되어야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결론 내릴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적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보았다. 비록 Gast 위원은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가 필라2 모범규칙의 요구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효과적인 공시를 제공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할 수 있</p>

IAS 12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12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12 is not fully align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illar Two model rules, he is of the view that providing no effective disclosures would be misleading and fail to meet the objective of financial statements set out in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p>	<p>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명시된 재무제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p>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②~③ (생략)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⑦ (생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략)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4. (생략)

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⑩ (생략)

제4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⑬ (생략)

제5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 ①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
 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②~③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